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재급여 우선지급제 도입 등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3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산업재해 통계 등 공시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3
2. 증명책임의 범위 구체화 등	8
3. 업무상 질병조사의 실시 및 질병조사 참여권 등	15
4. 근로복지공단의 질병조사를 위한 의료정보요청권 신설	21
5. 의사 등의 재해자 동의 없는 산재 신고 등	24
6. 질병조사의 기한과 산재급여 우선 지급제 도입 등	28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에서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처리 지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근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의 평균 소요 시간은 2018년 평균 385.9일에서 2023년 952.4일로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직업병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직업환경연구원 기간 역시 같은 기간 평균 211.8일에서 588.1일로 약 2.8배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를 얻게 되거나, 생계 곤란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역학조사 및 산재 승인 대기 중 사망한 근로자는 149명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업무상 질병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를 통해 조사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업무상 질병 판정서, 심사·재심사 청구의 결정서와 재결서, 판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등).

Ⅲ. 검토의견

1. 산업재해 통계 등 공시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안 제11조제1항제1호, 제33조의2, 안 제38조제4항·제5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으로 산재보험 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통계 작성·공시를 규정하고(안 제11조제1항제1호),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산재보험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험급여 청구 대비 지급비율, 지급 처리기간, 결정사항 등 산업재해보상 운영실적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며(안 제33조의2 신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8조제4항·제5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u>유지</u>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 -----. 1. ----- ----- <u>유지 및 통계 작성·공시</u>

2. ~ 8.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③ (생략)

<신설>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

의 공시)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
보험 사업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 청구 대비 지급비율

2. 보험급여 지급 처리기간

3. 보험급여 결정사항

4.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5.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청구의
결정서, 재심사청구의 재결서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보상 운영실적과 관련
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④ 판정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
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
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

<신 설>	러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정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한 방안 및 보관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정보나 통계에 관한 자료 공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¹⁾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 등 주요 통계를 공시하고 있는데,²⁾ 주로 산재급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2) 7개 분야(적용, 징수, 보상, 요양, 산재기금, 행정구제, 병원시설) 총 49개의 통계표를 국가승인 통계로 관리하고, 보상분야 11개 지표[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연도별, 보험급여 종류별), 질병/사고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연도별 보험급여 평균 지급액,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의료기관등급별 진료비(세부항목) 지급 현황,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현황, 보험급여 지급현황(연도별, 사업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지급현황]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상태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매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제작하여 업무상 재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³⁾ 산재 승인 이전의 정보 즉, 산재심사 기간 등 보험행정상 처리실적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산재보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보험행정상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산재예방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공시하도록 하는 개별법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보험행정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시하게 하려는 것으로, 산재 관련 정보의 공표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 및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주요 사항 및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단서 규정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정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자 개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 성별, 연령별, 질병종류별, 지역별, 건설공사금액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하여 현황 자료를 분석·공표하고 있음.

다만, 안 제33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청구의 결정서, 재심사청구의 재결서 및 안 제38조제4항·제5항의 판정위원회 회의록 등은 밀접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정서 및 결정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보공개 및 공시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① 현재 산재 신청에 대한 승인·불승인 건수 및 승인율(제1호, 제3호)은 기공시 중이고, ② 보험급여 지급 처리기간(제2호)은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시 가능하다고 설명함. ③ 업무상질병 판정·심사·재심사 결정서 및 회의록 등의 경우(제4호~제6호) 주요 결정이 되는 일부 결정서⁴⁾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기공시 중이고, 향후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공시 가능하다는 입장임.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록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등을 비식별화하여 당사자에게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33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제4호부터 제6호의 판정·심사·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청의 결정서·재심사청구의 재결서, 회의록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4)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9월 8일부터 2017~2021년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심사결정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음.(업무상질병판정서: <https://jilbyungcase.comwel.or.kr> 심사결정서: <https://simsacase.comwel.or.kr>)

2. 증명책임의 범위 구체화 등(안 제37조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를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보고(안 제37조제1항 단서),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해당 근로자’로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 ----- ----- ----- ----- <u>.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본다. 이때 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를</u>

1. ~ 3. (생략) ② ~ ⑤ (생략)	<u>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u>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의 요건과 입증책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그 유족(이하 ‘근로자측’)이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⁶⁾를 일컫는데,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수행성(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것)’과 ‘업무기인성(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함.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요건이 증명되지 못함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의미하는데,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권리근거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5) (자구) 개정안은 현행 제37조제1항 단서를 보충하는 내용이므로 현행 단서를 존치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성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당사자는 그 권리의 장애·소멸·저지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⁷⁾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근로자측)이 부담한다고 볼 것임.⁸⁾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관하여 ①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고(증명책임의 귀속), ②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증명의 정도),⁹⁾ ③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증명의 기준),¹⁰⁾ ④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

7)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입증책임분배에 있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권리근거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당사자는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또는 권리저지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대법원 역시 그 입증책임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8) 대법원 2021. 9. 9. 2017두45933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의 개념,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및 이 사건 조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그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대법원, 2015두3867, 2017.8.29.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0) 대법원 2017. 8. 29. 2015두3867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¹¹⁾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증명책임의 완화).¹²⁾

다. 검토의견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로 구분되는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①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②해당 업무를 고려할 때 해당 요인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¹³⁾

한다…”

11)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나 기간 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시설에서의 근무 경력 등을 통해 이를 유추하는 등 사건 경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요사실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을 말함.

12) 대법원 2017. 8. 29. 2015두3867

“…특히, 회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 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업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측의 증명 정도, 증명 기준, 증명책임의 완화 사유 등을 관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현행 시행령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관시하고 있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 증명의 기준, 증명책임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해근로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재급여 심사 절차에서 재해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작업 현장에서의 일시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병되는 것으로 질병 유발 요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질병의 경우 대부분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발병은 되었으나 잠복기를 거쳐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유해인자 취급의 시기와 발병 사이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해 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사업주에 편재되어 있거나, 현재의 의학·과학 수준에서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등 근로자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면¹⁴⁾ 개정안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대법원도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¹⁵⁾함으로써 질병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해주는 해석을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하는 요소로 법적·규범적 관점을 명문화하는 것은 수용하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재해자 입증 노력 없이 공단이 산재를 모두 입증해야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4) 이동현,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과 증명 책임’, 월간노동법률, 2018.7.

1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3. 업무상 질병조사의 실시 및 질병조사 참여권 등(안 제37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업무상 질병조사(이하 ‘질병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37조의2제1항),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 사업주,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질병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7조의2제2항), 근로복지공단의 질병조사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적극 협조 및 정당한 사유없는 거부·방해·기피 금지를 규정하려는 내용임(안 제37조의2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자료수집, 역학조사, 의료자문 등 업무상 질병조사(이하 “질병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질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 ⑤ (생략) ⑥ 그 밖에 질병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으로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¹⁶⁾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¹⁷⁾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제31조)¹⁸⁾·사업주 등에 대해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제114조)¹⁹⁾·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제117조)²⁰⁾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이상의 규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 권한은 존재하나, 명문의 법령은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내규)을 통해 재해조사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고 있음.

8. 제5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보고 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공단이 업무상 질병의 판단을 위한 질병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한편, 질병조사의 참여와 관련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²¹⁾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내규)은 ①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유해인자, 화학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신청인, 보험가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들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이들을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²⁾

21)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①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22)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재해조사) ⑨ 소속기관장은 제8항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및 보험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령상 역학조사(작업장의 유해요인과 근로자의 질환의 상관관계)에 한정되어있는 관계인들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병조사의 전체 범위로 확장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신청인등을 질병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보완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공단의 질병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 의무 및 재해조사 거부·방해·기피 금지의무(안 제37조의2제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때 현행법 제129조제3항제4호는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시 공단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²³⁾하고 있으므로, 동 의무의 실효성 확보 및 현행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치 마련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사람

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문서,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조사 일시·장소 등을 미리 알리고, 동 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등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제8항제1호 본문에 따른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현장 확인조사 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으로 보험급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 사업주, 근로자대표 외에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는데(안 제37조의2제2항),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해당될 수 있는지 위임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국세청, 경찰청 등) 및 이해관계자(사업주, 재해자 등)의 협조 등을 명문화하는 것은 수용하나, 업무상 질병은 재해경위 확인·직력조사·현장 조사 등 여러 조사절차를 통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최소 90일의 처리기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4. 근로복지공단의 질병조사를 위한 의료정보요청권 신설(안 제37조의2제5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5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조사의 실시) ① ~ ④ (생략) ⑤ 공단은 질병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u>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⑥ (생 략)</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등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⁴⁾

구체적으로 요청이 가능한 정보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건강검진 관련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²⁵⁾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됨.²⁶⁾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5)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별표1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 중 일부 발췌
차.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위해 필요한 의료정보·고용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²⁷⁾ 근로복지공단의 내실 있는 재해조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는 피보험자의 재직기간, 사업장 정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보임.

참고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동일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²⁸⁾ 관련 2023. 12. 5. 실시된 입법공청회에서는 보험사업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령상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²⁹⁾ 재해조사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³⁰⁾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관련 자료,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고·검사 관련 자료

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 자료,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자료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제131조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결과 등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915호

29)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0) 2023. 12.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자료, p. 15.

5. 의사 등의 재해자 동의 없는 산재 신고 등(안 제116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사등’)가 4일³¹⁾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안 제116조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안내·조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16조제6항·제7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31)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되는 부상·질병의 경우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u>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u> <u>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한다.</u> <u>⑦ 제6항에 따른 조력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³²⁾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데,³³⁾ 2024년 기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한 경우는 전체 요양급여 신청 건수 173,603건 중 107,884건(62.1%)임.

한편,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산재은폐가 전체

3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상급종합병원, 일정한 시설·인력 요건을 충족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포함됨.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산재 발생건수 중 66%에 이른다는 지적,³⁴⁾ 직업성 암 추정 건수 중 실제 보상건수는 1%에 불과하다는 지적³⁵⁾ 등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시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사등의 신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산재급여 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산재보험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은폐된 산업재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2024년 말 기준 6,475개소로, 전체 건강보험 요양기관(약국 제외³⁶⁾, 78,261개소)³⁷⁾ 중 8.3%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의사등의 산재 신고를 허용하여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산재 은폐를 억제하고,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산재보상 절차로의 이행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의사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업무상 재해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34) 김정우(2020),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산업노동연구」 27(1)

35)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1), “안전보건이슈리포트”(제1호), pp. 6-7.

36)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37) ‘2024년 종별 요양기관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검색

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른 의사등의 업무상 재해 관련 신고는 의료인의 자발적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의사등의 산재 관련 지식 부족·행정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신고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의사등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보험급여를 받기 이전이므로 안 제116조제5항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환자’로 수정하고, 의사등의 신고가 있어도 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정 이후에 환자의 보험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안 제116조제6항의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을 ‘환자’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의사의 산재 신고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관장기관과 의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의사가 산재보험관장기관에 근로자의 산재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³⁸⁾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근로자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

3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6), “독일 산재의사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p. 30.

함³⁹⁾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6. 질병조사의 기한과 산재급여 우선 지급제 도입 등(안 제37조의2제4항 및 안 제82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조사의 기한을 60일로 정하되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180일을 질병조사 기한으로 정하도록 하고(안 제37조의2제4항), 공단이 질병조사 기한을 초과하여 질병조사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질병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의사등의 산재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질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며(안 제82조의2제1항),

공단의 지급결정 간주 및 우선지급금의 지급에 현행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⁴⁰⁾를 준용하여 우선지급금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82조의2제2항·제3항)

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조사의 실시) ① ~ ③ (생략) ④ 질병조사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⑤ ~ ⑥ (생략)
<신설>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7조의2제4항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재해조사 ⁴¹⁾ 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3. 제116조제5항과 제6항에 의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질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② <u>공단이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기간⁴²⁾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u> ③ <u>우선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우선지급금”으로 본다.</u> ④ <u>그 밖에 우선지급의 요건, 신청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급여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기간,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⁴³⁾

41) (자구) 안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조사로 해석되므로, 재해조사→질병조사로 자구 수정 필요

42) (자구) 안 제37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조사의 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재해조사기간→질병조사기간으로 자구 수정 필요

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기관)의 내규에서는 역학조사의 기한을 180일로 하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⁴⁴⁾

최근 산재사건의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9.1일에서 2024년 63.9일로 63.4% 증가하였고, 이 중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172.4일에서 2024년 227.7일로 32.1% 늘어났음.

[산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재 평균 처리기간*	39.1	43.4	47.6	55.0	63.9
업무상 사고	15.5	15.3	15.9	16.5	17.7
업무상 질병	172.4	175.8	182.0	214.5	227.7

*업무상 재해로 처리된 최초요양, 유족급여, 최초요양 결정성 요양비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기간

**자료: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사건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직업병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2020년 기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기관)에 의뢰된 사건의 역학조사 기간은 441.4일, 직업환경연구원(근로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4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역학조사 결과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규칙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한 역학조사의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역학조사 결과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간 내에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의뢰된 사건의 역학조사 기간은 275.2일이었으나 2024년 기준 각각 699.8일과 588.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학조사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2020년~2024년 역학조사 의뢰건수, 회신건수 및 소요일수]

(단위: 건, 일)

구분	전 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		
	의뢰	회신	소요일수	의뢰	회신	소요일수	의뢰	회신	소요일수
2020년	607	561	296.8	54	70	441.4	553	491	275.2
2021년	679	526	400.7	83	69	601.3	596	457	371.5
2022년	474	456	466.1	36	58	659.8	438	398	436.7
2023년	204	517	635.0	30	66	954.6	174	451	588.1
2024년	308	328	604.4	26	47	699.8	282	281	588.8

* 자료: 고용노동부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이 지체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⁴⁵⁾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재해근로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부가

45) 원칙적으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산재승인 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산재 승인 후에 과도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됨.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가능한 상황이나,⁴⁶⁾ 건강보험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의 지원이 지체될 수 있고⁴⁷⁾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이에 대한 불복⁴⁸⁾도 청구할 수 없는 등 재해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것임.

이에 개정안은 질병조사 기한을 60일(역학·전문 조사 실시의 경우 180일)로 규정하고, 공단이 해당 기한을 초과하여 질병조사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재해조사 진행하였음에도 원인 불명인 희귀질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의사등의 산재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질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재여부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며, 조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임.

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48) 산재급여 결정은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심사, 재심사(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을 통해 이루어짐.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산재급여 우선지급을 규정하면서도 우선지급분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추후 산재 불승인 결정이 있더라도 지급된 산재급여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산재 불승인된 우선지급분의 환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환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산재급여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산재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지급분은 추가 재정소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⁴⁹⁾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서, 기존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을 고려한 추가재정소요(추가재정소요(Ⅰ))는 2026년에 3,014~4,198억원, 2030년에 3,397~4,73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 6,011억원~2조 2,299억원(연평균 3,202억원~4,460억원)으로 추계되고, 최종적으로 산업재해 불인정 건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된 산

49) 현행법상 산재 인정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 시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산재급여를 우선지급하는 경우 중 추후 산재 인정 결정이 있는 경우는 추가재정소요가 없음.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재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추가재정소요(Ⅱ))는 2026년에 986~1,827억원, 2030년에 1,111~2,059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5,239억원~9,704억원(연평균 1,048억원~1,941억원)으로 추계된다고 의견을 제시함.⁵⁰⁾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 적립금은 25조 3,653억원으로, 연평균 5% 상당의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24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재기금의 미수채권 충당률이 40.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⁵¹⁾ 기금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차 및 기금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순수입	82,878	95,277	91,505	102,775	109,039	114,193
순지출	70,771	80,083	88,844	90,753	95,668	100,176
수지차	12,107	15,194	2,661	12,022	13,371	14,018
적립금	207,196	222,222	224,883	240,340	253,653	267,671
전년대비 적립금증가율	6.21	7.25	1.21	5.23	5.54	5.53

*순수입에는 보험료 수입, 여유자금 운용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되고, 공자기금 예탁회수분 등은 제외함.

**순지출에는 산재보험사업, 산재예방사업, 기금운영비가 포함됨.

***자료: 고용노동부

50)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0,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추계번호25B0259)

51) 기획재정부, 「2024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4.5.

셋째, 개정안은 산재급여 우선지급제도를 도입하면서 우선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산재급여수급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우선지급 대상이 되는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등 대강의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넷째, 개정안에 따르면이라도 법체계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재해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이고⁵²⁾ 재해조사 결과 질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재해근로자는 보험급여 지급 요건(업무상 재해 인정)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볼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바, 산재급여를 우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면 증명책임에 관한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³⁾

참고로, 해외의 산재보험급여 우선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보험급여 우선지급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반면,⁵⁴⁾ 일본은 치료비에 대하여만 우선지급제도를 실시하되 의료기관에

5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 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

53) 안 제37조제1항 단서에서는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 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질병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사례 중의 하나를 제시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는바, 이러한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우선지급과 증명책임을 충돌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무이자 대부를 실시하고 산재 불승인 시 건강보험과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⁵⁵⁾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업무상 질병은 재해경위 확인·직력조사·현장 조사 등 여러 조사절차를 통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최소 90일의 처리기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안 제82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보험급여 우선지급을 실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산재 불승인 시 기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환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대한의사협회는 산재급여 우선지급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⁵⁶⁾에 대해 산재급여 우선지급 후 산재가 불인정될 경우 기지급된 산재보험금을 환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다시 청구하여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야하는 행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으로 인해 환수해야하는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지급금 환수가 어려울 경우 기금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54) 다만, 임승지 등의 연구(“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41(1), 2021, pp. 73-74.)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는 근로능력 상실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독일은 70%, 프랑스는 50%)을 기준으로 장기간(최대 1년 내외) 상병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55)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2025.2.)

56) 대한의사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530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산재급여 우선지급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제출함(2025년 2월 7일 제출).

문 의 처
02)6788-5540